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4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 서

2023. 2.

기획행정위원회

목 차

1.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

2.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3

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2. 1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발 의 자: 남현주 의원 등 10명(김장관, 정순옥, 임미연, 이선주, 이진환, 박종길, 정창근, 권숙자, 장호섭)

○ 발의일자: 2023. 1. 20.(금)

○ 회부일자: 2023. 1. 20.(금)

○ 상정 및 의결: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3. 2. 1.)

2. 개정이유

○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사업을 신설하고, 협의회의 기능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을 추가하여,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범위에 "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"을 추가함(안 제4조)

○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"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"을 추가함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○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
-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

-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」 제42조의3

-「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3조, 제4조(통일부 훈령)

-「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

○ 비용추계: 미첨부대상

○ 입법예고(2023. 1. 20. ~ 2023. 1. 30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범죄로부터 우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안 제4조에서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을 지원범위에 추가하고, 안 제6조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, 법령위반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